

전기제품 PL 사례

텔레비전 폭발에 의한 화재 배상 요구

(가) 사건개요

김옥자의 딸인 소외 김명희는 1996. 7. 3. 12:00경 이 사건 건물 내 2층 안방에서 피고 회사인 ○○전자가 제조한 16인치 비디오비전(브이.티.알.검용의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시청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이 사건 텔레비전 뒷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 올라 동작스위치를 끄고 전원플러그를 뽑았으나 곧이어 이 사건 텔레비전에서 "펑"하고 폭발음과 함께 불이 솟아오르면서 커튼에 옮겨 붙어 급기야 이 사건 건물의 2층 내부와 그 안의 가재도구가 전소되었다. 위 사고는, 이 사건 텔레비전수상관(일명, 브라운관) 내의 고전압이 걸려있는 전자총 부분이 누전으로 인하여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그 누전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규명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텔레비전을 피고 회사가 1988말경부터 1990초경까지 사이에 제조한 것으로서, 위 김옥자는 화재 발생 약 6년전에 이를 구입하여 위 사고시 까지 사용하여 오면서 당시까지 이를 수리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한 바는 전혀 없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소비자가 화재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텔레비전 제조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대위청구한 사건이다.

(나) 판결요지(제조사의 책임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텔레비전의 폭발의 원인이 된 전자총 부분의 누전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텔레비전이 위와 같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폭발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텔레비전은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로서 그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결함은 피고가 이 사건 텔레비전을 제조하여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바, 무릇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1992. 11. 24 선고92다18139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텔레비전의 제조자로서 이 사건 텔레비전의 결함으로 인한 폭발사고로 인하여 이 김옥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보험

자인 원고는 위 김옥자와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동인에게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위 김옥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다) 피고회사의 소비자 오사용 주장에 대하여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화재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텔레비전의 발화의 원인이 된 고전압부의 누전은 고전압부에 쌓여 있는 먼지가 습기를 흡수하든지 외부로부터 머리핀, 벌레 또는 물 등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김옥자가 이 사건 텔레비전을 구입한 후 이 사건 텔레비전의 고전압부에 많은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하여 습기흡수에 의한 누전발생을 초래하였거나 아니면 머리핀, 물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도록 방치함으로써 제조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에 의한 오사용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0000전문대학 전기과 교수인 소외 최00이 작성한 화재감정서인 강제 8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텔레비전의 고전압에 쌓여 있는 먼지가 습기를 흡수하든지 외부로부터 머리핀, 벌레, 또는 물 등이 들어가서 누전을 일으키는 경우를 들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당원의 국립 기술품질원장 및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텔레비전의 고전압부인 전자충은 밀폐된 수상관 (브라운관)내에 설치되어 있어 그 구조상 수상관 외부의 습기나 머리핀, 벌레 등을 흡수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누전발생 원인에 관한 강제8호증의 일부기재와, 위 김옥자가 이 사건 텔레비전을 구입한 후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사건 사고발생원인이 위 김옥자의 오사용에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면책주장도 그 이유 없다.

선풍기 회전 날개가 파열되어 입은 상해 배상 요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99. 8. 7 전자제품 매장에서 선풍기를 구입하여 보름정도 사용하던 중 선풍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남과 동시에 갑자기 날개파편이 철망 밖으로 튀어나와 왼손바닥을 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음. 청구인은 작동중인 선풍기에 손이나 다른 물체를 대는 등의 외부충격을 전혀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회전중인 선풍기 날개가 외부 충격이 없이 파손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며, 더욱이 선풍기 후방 조립이 혈겁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흔들거리는 후방에 의해 날개가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구인의 조립 과실을 주장함.

2. 처리 결과

명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청구인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병문안 및 위로금 50만원을 지불함.